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20,719,385	39,621,582
일반회계	1,053,551,418	31,606,543
특별회계	267,167,967	8,015,039
공기업특별회계	230,105,618	6,903,169
상수도사업	88,380,351	2,651,411
하수도사업	141,725,267	4,251,758
기타특별회계	37,062,349	1,111,870
교통사업 특별회계	26,349,407	790,48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82,061	38,46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017,756	90,533
대지보상 특별회계	905,600	27,168
기반시설 특별회계	229,438	6,883
수질개선 특별회계	5,278,087	158,34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687,94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